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35
----------	-------

발의연월일 : 2025. 9. 3.

발 의 자 : 강대식 · 박준태 · 조지연
김상훈 · 임종득 · 이인선
고동진 · 이양수 · 최수진
백종현 · 강민국 · 김장겸
의원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에서 현역병 입영 후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가 2025년 6월 30일부로 폐지되고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됨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모든 현역병 입영자는 입영판정검사 후 입영을 하는 상황임.

그러나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정상적인 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영하는 경우나 학군 후보생 추가 합격 등과 같이 현역병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하는 불합리한 실정임.

이에 현역병 복무가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귀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병훈련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신

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입영 후 귀가) ① 입영부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다.

1.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입영판정검사를 한 후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영 후 귀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7조(입영 후 귀가) ① 입영부</u> <u>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현역병입영</u> <u>대상자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u> <u>부터 7일(토요일 및 공휴일을</u> <u>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u> <u>다) 이내에 귀가시킬 수 있다.</u> <u>1. 입영판정검사 후 질병에 걸</u> <u>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현역</u> <u>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u> <u>판단되는 사람</u> <u>2.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에</u> <u>「군인사법」에 따른 사관후</u> <u>보생, 준사관후보생 또는 부</u> <u>사관후보생 과정에 선발된 사</u> <u>관</u> <u>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u> <u>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u> <u>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u> <u>따라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u> <u>입영판정검사를 한 후 신체등</u> <u>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u> <u>거나 다시 입영시켜야 한다.</u>